

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희동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24-30
----------	--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2. 21.

발의자 : 김희동, 신찬호, 정재봉,
전철규, 박성호, 최세진,
이종숙

1. 제안이유

화재안전취약가구에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과 「치매관리법」에 따른 치매환자를 포함시키고, 해당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확대 지원하여 강서구 관내의 주택 내 화재 사고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화재안전취약가구의 확대(안 제2조)

- 수정 :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가구 ⇒ 65세 이상 노인 거주 가구
- 신설 : 「치매관리법」에 따른 치매환자 거주 가구

나. 한글맞춤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규정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, 「노인복지법」

제26조, 제39조의9, 「치매관리법」 제2조 제2호

나. 협조부서 : 안전관리과

다. 입법예고 : 2024. 2. 23. ~ 3. 4.

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
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
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가목 중 “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”를 “「국민기초생활
보장법」 제2조”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”를
“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”로 하며, 같은 호 다목 중 “「한부모가족지원
법」 제4조”를 “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”로 하고, 같은 호 라목 중
“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”를 “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”로 하며, 같은
호 마목 중 “이상 홀로 사는”을 “이상의”로 하고, 같은 호 바목 중 “「의
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”를 “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
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”로 하며, 같은 호 사목을 아목으로 하고, 같은
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사. 「치매관리법」에 따른 치매환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</p> <p>1. “화재안전취약가구”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.</p> <p>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</p> <p>나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</p> <p>다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</p> <p>라.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</p> <p>마.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</p> <p>바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의사자 유족 및 의상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----- -----</p> <p>나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-----</p> <p>다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-----</p> <p>라.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----- ----- -</p> <p>마. ----- - 이상의 -----</p> <p>바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-- -----</p>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자 가족</p> <p><신 설></p> <p>사. (생 략)</p> <p>2. (생 략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p> <p>사. 「치매관리법」에 따른 치매환자</p> <p>아. (현행 사목과 같음)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
--	--

□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제10조(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)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□ 「노인복지법」

제26조(경로우대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·능원·박물관·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.

제39조의9(금지 행위) ①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(이하 이 조에서 “노인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□ 「치매관리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. “치매환자”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.